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42

발의연월일: 2022. 10. 18.

발 의 자 : 홍익표 • 이병훈 • 신정훈

김영배 · 홍성국 · 전혜숙

이개호 · 임종성 · 이원욱

유정주 • 전재수 • 윤영찬

신현영 · 권칠승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 소비재 산업 및 관광산업, 국가이미지 제고에 현격한 공헌을 하고 있는 한류콘텐츠 수출과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 경쟁국가인 미국, 영국 등은 약 25% 수준의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3~10% 수준의 세액공제 제 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 대비 산업적 파급력에 한계가 있습 니다.

더구나 거대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이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며 한국진출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제작사역시 제작비 경쟁으로 재정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바, 국내콘텐츠업계의 제작의지 고취 및 지속가능한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미국 등 거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률이 확대되는 등 영상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영화로 국한되어 있는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동 영상서비스를 위한 영상콘텐츠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자 합니다(안 제25조의6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를 영위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아 혂 행 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 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년 12월 31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 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 -----영상콘텐 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 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6(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 경우에는 100분의 14,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 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 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프로그램